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및 관리 철저 요청

1. 관련 : 학술진흥과-4226(2018.7.31)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9호를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제7항을 신설하여 대학이 연구업적 관리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침 개정사항 및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재안내 하여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2]를 참조하시어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결과물 관리시스템(대학 업적관리시스템 등)의 저자 정보를 2019년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여 그 조치결과를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업적관리시스템에 논문 입력시 공저자 표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배너 설치, 소속 교원 및 연구자에 공문, 메일 등을 시행하여 연구물의 저자 정보 재확인 요청, 연구결과물 관리시스템 개편 등

- 붙임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3. (양식) 대학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조치결과 제출 양식. 끝.

교육부 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학술단체

주무관 **안경주** 행정사무관 **정아름** 학술진흥과장 **윤소영** 2019.9.19.

협조자

시행 학술진흥과-5102 (2019. 9. 1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어진 / www.moe.go.kr
등)

전화번호 044-203-6879 팩스번호 044-203-6875 / angj92@korea.kr / 대국민 공개